제3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1. 2. 3.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1년 2월 3일(수) 14:00~15:30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도　규　상　위원장

이　명　순　위　원

이　상　복　위　원

이　준　서　위　원

박　재　환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1년도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1) 2020년도 제21차, 제22차, 2021년도 제1차,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 및 제1차 임시증권선물위원회 회의록 보고

□ 2020년도 제21차, 제22차, 2021년도 제1차,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 및 제1차 임시증권선물위원회 회의록은 차기회의에 보고

2)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1호 **『케이비증권㈜의 이지스제371호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회사 사후 출자승인 신청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이렇게 단기간 내에 회사를 청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보고자) 펀드 자산을 실사하는 과정에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LTV규제 초과 이슈가 문제가 되어 그것을 계기로 부동산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고 처분하고 청산하는 절차를 밟았음.

○ (위원) 부동산이 다 매각이 됐는지?

- (보고자) 부동산은 이미 처분이 됐고 잔여재산 분배도 완료됐음.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3)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30호『㈜○○○○○○○**의 이의신청에 대한 ○○안**』, 제31호『㈜○○○○○(舊 ㈜○○○○○○○○)**에 대한 직권재심 ○○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과 회계기획감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감리위원회 소수의견으로 '이의신청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 감안 필요'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 (보고자) 증권발행제한 12월의 조치를 2020년 10월에 했으면 지금 조치하는 것은 그로부터 3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였음. 저희는 기존 조치와의 형평성이 있어 증권발행제한 12월을 해야 된다고 생각함. 최근에 조치한 사례로도 과징금 부과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취소가 되었는데 2014년에 증권발행제한 10월을 조치한 것을 2021년 1월에 조치하면서 그대로 부

과했음. 그 사례에 비추어 보면 동 건의 경우에도 증권발행제한 12월을 그대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그리고 애초부터 원조치할 때 증권발행제한 조치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

○ (위원) 저희들이 작년에 회의를 하면서 제247호와 제248호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회생 중인 경우와 회생이 끝난 경우에 대해 질의를 드렸고 금감원 자료에서도 회생 중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만 회생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본시장 업무규정」 [별표3]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5.가.(2)에 대한 내용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한 내용이고,「자본시장 업무규정」 [별표3]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5.가.(3)에 보면 이미 회생이 안 되는 제척기간이 경과하거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있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미 규정이 증권발행제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음. 그런데 그때 질의를 드렸더니 이것은 회생 중인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했고 과거에 종료된 회생절차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증권발행제한으로 대체한 과거 조치사례가 없었고 과거 5개년 동안 기업회생과 관련된 사유로 과징금을 증권발행제한으로 대체한 2개사 모두 증선위 의결일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음. 그렇다면 그때 규정 적용을 잘못하신 것인지?

- (보고자) 원조치 당시에 회사 측에서 의견진술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규정 해석을, 회생계획인가 이후에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서 과징금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로 제한해서 해석을 한 것이고 ㈜○○○○○○○나 ㈜○○○○○ 모두 증

선위 의결일 이전에 회생절차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었던 것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채권채무관계도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능력이 실제로 없는 것으로 봐서 유가증권 발행제한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었고 회생절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에는 기존 채권채무도 다 정리하고 다시 납부능력이 생긴 것으로 봐서 그렇게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던 것임. 그런 과정에서 혼선이 좀 있었음. 여기에서 유가증권발행제한을 단축해 주어야 된다는 논리는 원조치 당시부터 발행제한이 되었으면, 예를 들어 기간이 이미 경과했으니까 그만큼 늘어지지 않고 빨리 끝났을 텐데 이것을 저희가 수정으로 재조치를 함으로써, 기산일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기간이 더 늦게 종료된다는 이유임.

○ (위원) 회사가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모르겠지만 감독당국에서 과징금 부과가 불가하여 증권발행제한으로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이의신청에 의해서 바로 잡으면서 조치를 하는 것이고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새로운 조치로 보느냐 아니면 지난번 조치의 오류에 대한 조치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음.

○ (위원) 금감원은 증권발행제한 조치는 새로운 조치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증권발행제한 조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과징금이 부과되어 그에 대한 대체라면 3개월을 빼 주는 것이 맞는 것임.

- (보고자) 애초부터 저희가 감안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 맞지만, 회사가 원조치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내용이 일단 없음. 이의신청 제기하는 절차와 소송하는 것이 똑같은 불복으로 성격이 똑같다고 생각함.

○ (위원) 감리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했었는데 이 경우에는 순수하게 증권발행제한 12월이라는 효과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했고 그와는 별도로 감독당국이 실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것이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감리위에서는 소수의견으로 명시하되 원안 심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림.

○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징금을 취소하면서 새롭게 부과하는 증권발행제한 조치가 새로운 조치인지 아니면 대체조치이기 때문에 원조치의 대체조치로 볼 것인지 하는 것이 문제임.

- (보고자) 원조치('20.10.14.)에 증권발행제한 조치 내용이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부로 재조치로써 증권발행제한 12월이든 하게 되면 증권발행제한이라는 행정조치는 오늘 성립하게 되는 것임.

○ (위원) 그런데 이것이 통상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이지만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나서 직권재심 또는 이의신청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할 때 그 사이에 엄청난 어떤 사건들이 있는 경우, 기산일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음. 증선위에서 임의로 11월, 10월, 9월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

니면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 (보고자) 양정기준에서 12월, 11월, 10월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증선위원님들께서는 그 양정기준과 다르게 재량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

○ (위원) 처음 선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기위해 유보하는 것이 어떠한지?

○ (위원장) 그렇다면 기산일이 어떻게 되고 하는 부분들은 좀 더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음. 그렇게 해서 다음 증선위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음.

○ 각각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보류*함**

* 만장일치로 보류를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23호『㈜□□□□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지금 보고해 주신 설명자료에는 D씨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데 수사기관 참고사항으로 정보제공하는 것은 E씨도 포함되어 있는지?

- (보고자) 그러함.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32호『**●●●●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2페이지 조사실시 배경으로 '회계부정 및 시세조종행위 혐의에 대한 기획조사 검토에 따라 2018.9.12. 기획조사를 실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나 감리를 했는지?

- (보고자) ●●●●㈜이 2017년 당시에도 4개년 사업연도 연속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등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된 상황이었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하여 조사했으며 실질적으로 이 건에서는 회계부정과 관련된 혐의를 확인할 수 없었음.

○ (위원) 수수료 등에 대한 대가수취가 없었고 관리계좌가 부친명의 포함 16개에 불과해서 미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미등록 투자일임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 (보고자) ㉮㉮㉮은 이른바 주식투자전문가로 ◇◇◇◇◇◇에 출연하면서 주식 관련된 정보를 해석하고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클럽의 구성원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행태를 주된 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 투자자들이 ◍◍◍씨에게 매매를 직접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주문대리인으로 직접 등록한 상태에서 여기 적시된 16개 계좌에 대해 매매대행을 하였는데 별다른 수수료 수취 행위도 없어서 그 자체로 투자일임업을 위반했다고까지는 판단하지 않았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33호『㈜●●●●●●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시세조종 양태와 횟수는 나오는데 '상호 공모하여'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다른 안건들과 달리 이 13명이 공모했다는 인적연계라든가,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 등 공모에 대한 증거가 적시되어 있지 않음.

- (보고자) 장중에 계속 매매내용에 관해서 메신저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음. 앞으로 잘 기재하도록 하겠음.

- (보고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건은 작년 10월28일에 시세조종 행위로 고발된 ▨▨와 동일한 행위자들이 ▨▨ 이전에 시세조종을 한 건임.

○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순서를 놓고 보면 저희들이 이미 기조치했던 ▨▨건에 비해서 ㈜●●●●●●가 2018년 2월부터 9월까지로 이른 것임. 이미 제재를 했던 ▨▨는 2018년 10월부터 12월이고,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들이 제재를 했던 6인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지?

- (보고자) 맞음.

○ (위원) 그다음에 제재할 때는 명확한 위법사항을 잘 몰라서 적시하지 못해서 제재를 못했던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음. 참고사항으로 기재하기도 했고, 그래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재했을 때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보고자) 그래서 저희가 검찰에 참고인 진술을 갈 때 이 내용들을 같이 포함해서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진술할 예정임.

○ (위원) 그런데 이미 고발을 했는데 검찰조사 단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 (보고자) 아직 착수가 된 상태는 아니고 이 건이 통보가 되면 기존의 ▨▨와 병합되어서 처리될 것으로 보임.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34호『◇◇◇◇◇◇◇◇◇◇ 등 25종목 ETF에 대한 시장질서교란행위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이 거래금액이 '조'가 넘어가는데 맞는지?

- (보고자) 이것이 ETF 거래이기 때문에 매매량이 많을수록 상금을 받는 이벤트이므로 매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하루에도 엄청나게 거래를 했었음.

○ (위원) 그런데 개별종목도 아니고 ETF를 가장매매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물론 보니까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만 선정해서 한 것 같은데 이 ETF 관련해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이것이 첫 안건인지?

- (보고자) 맞음.

○ (위원) 이것이 어떤 경우 상금을 주는지?

- (보고자) 예시를 들면 하루에 2억 원 거래한 10명 선착순에게 100,000원 이렇게 지급을 함.

○ (위원) 이분들 받은 상금이 얼마인지?

- (보고자) A는 거래를 해서 손실이 한 1억 원 정도 났는데 상금을 2억 1,000만 원 정도 받았고, B는 상금을 3억 6,000만원, C는 2억 8,000만 원을 받았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29호『㈜씨젠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281호『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종합 및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282호『대신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283호『케이비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 **각각 보류함(미상정)**

다.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1년도 증권선물위원회 제3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5시30분 폐회)